

제 2025-050419 호
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(최초)[산업안전지도사]

성명		산업안전지도사 이한옥	
사무소	사무소 명칭	이한 안전컨설팅 건설공사	
	소재지	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(부산티플렉스 119동 217호)	
	대표자 성명	이한옥	
지정사항	총 업무(지정) 한 계	지정인력 1명 * 지도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, 월 최대 80회	
	관 할 지 역 업무(지정) 한계	지정인력 명 * 지도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, 월 최대 80회	
	업무(지정) 지역	부산청 및 그 소속지청 관할지역 (부산, 울산, 경상남도)	

※ 준수사항

1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2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3. 그 밖의 사항

※ “지정사항” 및 “준수사항”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5. 6. 5.

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

